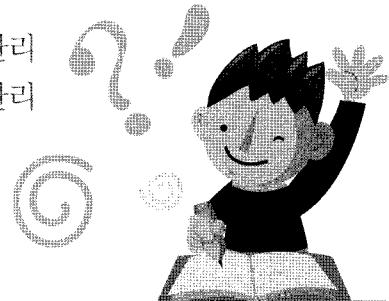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경관리 Q&A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순환시설에서의 폐수 발생량 및 보관량 산정은?

황산제조시설의 유리관을 세정하는 작업장에서 하루 세정용수 12m³, 불산(pH 3)용액 12m³를 사용합니다. 폐수는 위 용수를 5일간 순환사용 후 일괄 배출할 경우, 폐수용량은 24m³/일 인지? 5일후 발생되는 폐수용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 폐수를 5일간 저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 데... 5일후 24m³가 나오므로 저장용기는 폐불산용기 15m³와, 폐세정용수 15m³ 정도면 되는지요?

아니면 24m³×5일간의 용량의 저장용기가 필요한지요?

A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량은 1일 최대폐수량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폐수를 재순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1일 최대 폐수량은 1일 최대순환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폐수를 위탁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14]에 의한 저장시설의 규모는 5일 분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5일 분 이상의 저장용기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의 폐수발생량은 1일 발생량인 24m³/일로, 저장용기는 5일분 이상의 용량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Q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대상 관련은?

1. 구미산업단지(4단지)에 입주하여 있는 업체의 경우, 단지내에 설치된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함)로 유입이 되는 경우라면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완충저류

시설에 대한 지정·고시된 바 없음)와,

2. 대구달성산업단지의 경우 2006년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지정 고시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지 내 운영중인 업체의 경우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대상 업체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단지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거나, 공동저감시설까지 유입관로를 매설해야 한다면 모든 그에 따른 모든 시설을 해당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지요?

A 1. 개별사업장의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은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①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여 강우 유출수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구미산업단지(4단지) 입주업체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달성산업단지에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면 개별사업장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강우유출수를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기 위한 기반 관로는 설치되어 있으나 개별사업장에서 기반 관로까지 유입시키는 관로설치는 개별사업장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슬러지의 올바른 처리방법은?

A 저희 회사는 수질4종 배출시설로 폐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다른 부서에서 물청소흡입 차량을 운용중인데 수도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청소를 하면 슬러지(물 + 먼지)가 발생하는데 이 슬러지를 위탁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폐수처리장에서 자체로 처리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A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하는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규사업장 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청소수를 사업장의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하여 희석 등의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알쏭달쏭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은?

A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업장폐기물 중 소각재가 발생되어 처리업체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소각재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있어서 위탁처리 하려고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를 보니깐 소각재는 매립, 안정화처리, 고형화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립등의 방법이 아닌 재활용전문업체에 재활용으로 위탁하여 되는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동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동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각재를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소각재를 위탁처리 할 수 있습니다.

Q 토양오염도 검사(폐쇄)신고는?

A 휘발유와 경유를 저장하는 옥내 및 지하저장탱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옥내 저장탱크 28,500L를 금번

에 폐쇄하게 되어 지하저장탱크 3,000L만 남았습니다. 2만L 미만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폐쇄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러면 아직 저장량이 남아있고, 그 전에 토양오염도검사 면제 대상이었는데, 금번 저장시설 폐쇄로 토양오염도 검사도 받아야 하나요?

A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일부 저장시설 폐쇄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변경(폐쇄)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8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폐쇄전 3개월 이내에 수시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